

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) 공고 대상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	공고사유
1	전○국	2004.05.04.	어정로 **_**	2021.06.01. ~ 2022.05.31.	거주불명

2) 공고 기간 : 2022. 04. 29.(금) ~ 05. 20.(금) [21일간]

3) 신청 장소 : 실거주지 관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가능)

4) 발급 신청 시 준비사항

1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cm x 세로 4.5cm (여권용 사이즈)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[상반신 사진 1매](#)

2) [신분증명서](#) (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
([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\(신분증 지참\)이 동행](#))

※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[과태료 처분](#)을 받게 됩니다. [문의전화 : 031-324-6796 / 담당자 : 김민주]

2022년 04월 29일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장 [인]

